러시아의 경쟁정책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편집자 주 : 본 고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공정취인협회에서 발간되는 「공정취인」지 1997년 3월호에 게재된 『러시아의 경쟁정책』에서 발췌한 것임).

목적·적용 범위

러시아의 경쟁법은 1991년에 제정된 것으로 법률의 명칭은「상품시장에 있어서의 경쟁과 독점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으로 약칭)이다. 이 독점금지법의 기본 목적에 대해 동 법은 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경쟁의 방지와 제한 그리고 금지를 위한 조직과 법적인 기초를 규정하므로써 상품시장의 창조 및 효율적 기능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의 적용지역은 러시아의 영역 전체이며, 정부기관과 러시아 내의 외국법인 및 자연인, 그리고 관계되는 러시아 상품시장에 있어서 관계형성과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경제 주체에 의한 행동이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혹은 제한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러시아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받게 된다(제2조제1항). 그러나 동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소유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조제2항). 또한 증권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에 대하여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된다(제2조제3항). 또한 국제협정의 규정이 러시아 독점금지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국제협정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조제4항).

기본개념의 정의(제4조)

- **상품** :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생산물(용역서비스를 포함)
- **교환가능 상품** : 기능, 목적, 적용, 사용, 품질 및 기술적 특징이나 가격 등 기타 지표에 의하여 비교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구매자가 소비(중간소비 포함) 과정에서 상호 교환 또는 교환 용의가 있는 상품

· **상품시장** : 러시아연방에서 교환가능상품 또는 대용품을 포함한 상품 유통의 범위
· **경제주체** : 러시아 및 외국의 상업조직 및 동 단체. 단,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은 제외됨. 그러나 소비자, 농업협동조합 및 개인기업은 경제주체에 포함됨
· **불공정한 경쟁** : 다른 경제주체(경쟁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히거나 경쟁자의 사업상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러시아 독점금지법의 규정 · 거래관행 및 공정성에 반하는 기업행동을 통하여 우월성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주체의 행위
· **기술적 지위** : 특정상품의 유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교환가능상품 또는 대용품이 없는 시장 또는 다른 경제주체에 의한 진입이 곤란한 시장에서의 배타적 지위 또는 복수의 경제주체의 배타적 지위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이 65%를 넘는 경우에는 그 지위가 지배적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위는 지배적이 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65%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경제주체의 점유율의 안전성과 상대적인 점유율 및 신규 참임의 가능성 및 기타의 기준에 따라 독점금지위원회(러시아 연방 독점금지정책 · 신경제구조추진국가위원회의 약칭. 이하 동)에 의해서 지배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장점유율이 3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주체의 지위를 지배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독점적 행위** :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한 또는 배제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

지배적 지위의 남용 · 공동행위등의 금지(제5조)

(1) 경제주체에 의한 시장에 있어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경제주체나 자연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예 : 공급제한,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 법 제5조제1항). 예외적으로 당해행위의 효과(사회적 효과 포함)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상회한다는 것을 경제주체가 증명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의한 특정의 경제주체 행위는 합법으로 본다(제5조제2항).

(2)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주체간의 협정(공동행위)(제6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주체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35% 이상인 경우 그러한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주체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협정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제6조제1항).(예 : 가격협정, 시장분할협정, 공동 보이코트 등)

또한 일방이 지배적 지위에 있고 타방이 그에 대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인 경우로서 경쟁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간의 협정이라도 그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협정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제6조제2항). 그러나 당해 협정의 긍적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회한다는 것을 경제주체가 증명하는 경우 그 협정은 합법이 된다(제6조제3항).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오도록 기업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독점금지위원회회에 의한 소송으로 동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제6조제4항).

(3) 정부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적 행위(제7조)

정부기관이 경제주체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정부주체의 행동에 차별적 상황이나 우월적 상황을 가져다주는 법의 채택 또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와 경제주체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위는 금지된다(예 : 경제주체 설립의 제한, 경제주체 행위의 방해, 우월적 지위의 부여). 정부기관이 경제주체의 설립이나 재편성, 청산 및 경제주체에의 특권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종을 받아야 한다(제7조제1항).

상품의 생산 판매를 독점화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기능과 경제주체의 기능의 결합도 금지되며, 경제주체에 정부기관의 기능,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제7조제2항).

(4) 정부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적 협정(제8조)

정부기관에 의한 다른 정부기관 또는 경제주체와의 협정이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주체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협정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예 : 가격협정, 시장분할협정).

(5) 연방정부직원의 기업활동에의 참가(제9조)

연방정부의 직원은 기업활동에의 종사, 기업의 소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투표권의 행사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6) 불공정경쟁의 금지(제10조)

불공정한 경쟁(예 : 허위정보의 유포, 부당표시, 타사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등)은 금지된다.

영리조직, 사업자단체의 설립, 재편성 및 청산에 관한 규제(제17조)

(1) 영리조직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경우에는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제17조제1항).

① 사업자단체 연합체의 설립과 합병

② 최저임금(월액. 이하 동.)의 10만배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가지게 되는 영리조직의 합병

③ 총 자산이 최저임금의 5천배를 초과하는 공영의 단일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제주체의 청산 및 분할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하는 경제주체 또는 당국은 독점금지위원회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점금지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제2항).

독점금지위원회는 당해조직이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강화하게 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에는 당해 설립, 재편성, 청산의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설립, 재편성, 청산을 행하는 경제주체 당국이 그 행위의 성과(사회적 효과를 포함)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상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위원회는 당해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제17조제3항).

(2) 상기 (1) 이외의 행위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행위에 필요한 정보와 같이 독점금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제4항).
① 발기인의 총 자산이 최저임금의 10만배를 초과하는 영리조직의 설립
② 총 자산이 최저임금의 5만배를 초과하는 영리조직의 합병

독점금지위원회는 제출된 정보를 예비 분석한 후 승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결론은 독점금지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독점금지위원회는 당해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러시아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영리조직의 설립등의 승약에 대한 추가심사를 개시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필요한 정보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7조제5항).
최종적인 결정은 영리조직의 설립 또는 합병이 경쟁제한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리조직의 설립의 발기인 또는 합병을 행하는 경제주체는 독점금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제6항).

(3)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의 국가 등록 또는 연합국가등록소로부터 영리조직인 법인을 제외하는 경우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설립 또는 재편성된 영리조직 및 사업자단체의 국가등록은 독점금지위원회에 의한 소송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제17조제8항).

주식, 자산의 소유등에 관한 규제(제18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의 취득(단, 경제주체 설립시의 발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② 생산설비 및 무형자산(장부가)의 10% 이상 취득
③ 경제주체의 기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
④ 동일상품 또는 그의 제조단계 또는 유통과정의 복수이사회에 동일한 경제주체가 참가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경제주체가 행하는 경우에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독점금지위원회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또한 ④항에 대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음 (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유자산의 장부가가 최저임금의 10만배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의 경제주

체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구입자가 구입선인 경제주체의 활동을 관리하는 인물중의 한 사람인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하기 전에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8조제2항).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독점금지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정은 필요한 서류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8조제3항).

독점금지위원회는 경제주체의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혹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의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독점금지위원회는 경제주체가 당해행위의 성과(사회적 효과를 포함)에 있어 긍적적 면이 부정적 면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신청을 승인할 수가 있다(제18조제4항).

(2) 상기 (1)항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이 최저임금의 5만배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경제주체가 같은 상품군에 등록된 경우는 당해 거래 후 15일 이내에 독점금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할 때에는 정보리스트에 따라 독점금지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제5항).

독점금지위원회는 제출된 정보를 예비 분석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 내용은 독점금지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할 사람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통지된 행위의 결과 경제주체가 지배적 지위를 획득 또는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독점금지위원회가 내리고 통지자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제18조제6항).

(3) 제18조제2항의 행위로 당해 경제주체가 지배적 지위를 획득 또는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당해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는 독점금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제7항).

영리조직 및 기업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강제분할(제19조)

영리조직 및 기업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이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복수의 독금법을 위반한 경우 분리 · 분할이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 독점금지위원회는 강제분할 또는 그의 조직구조를 기초로 하나 내지 복수의 조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강제분할의 결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① 조직의 구조상 조직면에서나 지역적으로 분리가 가능하여야 함

② 조직과 조직 사이에 밀접한 기술적 관련성이 없어야 할 것

③ 분할 결과 개개의 법인이 각 상품시장에서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여야 함

벌칙

(1) 영리조직 및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및 비영리조직은 다음 사항의 위반시 제재금의 지불책임을 진다. 제재금액은 제재금 부과 결정시 개개의 조직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제23조).

① 독점금지위원회의 명령을 기한 내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에 대한 실행이 주어진 기한에서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최저임금의 100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단, 최저임금의 2만 5천배는 넘지 않음.

②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된 신청통지서를 독점금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5천배까지 제재금 부과

③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확보하기 위한 독점금지위원회의 합법적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천배까지 제재금 부과

④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금지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면 등 기타의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에서 1일이 경과될 때마다 최저임금의 50배까지 제재금을 부과. 단, 최저임금의 5천배는 넘지 않음.

⑤ 독점금지위원회에 허위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천배까지 제재금 부과

(2) 영리조직 · 비영리조직의 경영자나 정부기관의 직원 및 시민

영리조직 · 비영리조직의 경영자, 정부기관의 직원 및 개인기업은 다음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금지불 명령 또는 경고를 받는다(제24조제1항).

① 기한 내에 독점금지위원회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200배까지 제재금

② 독점금지위원회 직원의 공무방해의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120배까지 제재금

③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독점금지위원회의 승인 없이 영리 조직 또는 단체를 등록한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780배까지의 제재금(제24조제2항)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시민은 다음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제24조제3항).

① 러시아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독점금지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정보를 독점금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80배까지 제재금

②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된 신청 통지서를 독점금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80배까지 제재금

③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금지위원회에 의한 합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최저임금의 100배까지 제재금

영리조직 · 비영리조직의 경영자, 정부의 직원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24조제4항).

손해배상

경제주체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여 다른 주체에 손실을 가한 경우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주체는 다른 주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 민법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경제주체 등에 입힌 손실 또는 동 기관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실도 민법규정에 의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26조).

절차규정

(1) 심사 절차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위반사건을 심사하여 결정 및 명령을 하게 된다. 사건은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정부기관, 검찰관으로부터의 신고 및 독점금지위원회의 직권탐지로 심사를 개시한다(제27조제1항).

독금법위반사건의 신고는 독금법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봉하고 서면으로 독점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때 서류 및 신고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27조제2항).

(2) 불복신청 절차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조직에 의한 신고서 또는 통지서가 독점금지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에 대하여 회신이 없거나 또는 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고자는 사법재판소 또는 조정재판소에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가 있다. 제19조에서 규정된 강제분할 · 분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재판소 또는 조정재판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정부기관,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개인기업을 포함하여 시민은 사법재판소 또는 조정재판소에 독점금지위원회의 결정(명령)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케 한다든지 또는 제재금부과 결정 또는 경고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독점금지위원회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재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제28조제2항).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 또는 조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는 독점금지위원회의 결정은 실행이 중단된다.

러시아 독점금지위원회

러시아 독점금지위원회의 정식명칭은 「러시아 연방 독점금지정책 · 신경제구조추진국가위원회」이며,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중앙기관과 연방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79개의 지방지부로 구성된다. 직원 수는 약2200명이다. 독점금지위원회의 의장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며, 그 지위는 보장된다(제3조제1항).

독점금지위원회는 지방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연방예산에 독립된 항목으로 반영된다(제3조제6항).

독점금지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관 및 전문가회의를 둘 수 있으며(제11조제3항), 시장기능의 개선, 경쟁의 발전, 독점화의 배제, 상품시장의 구조와 현상의 분석 및 독점금지위원회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과학적 기법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독점금지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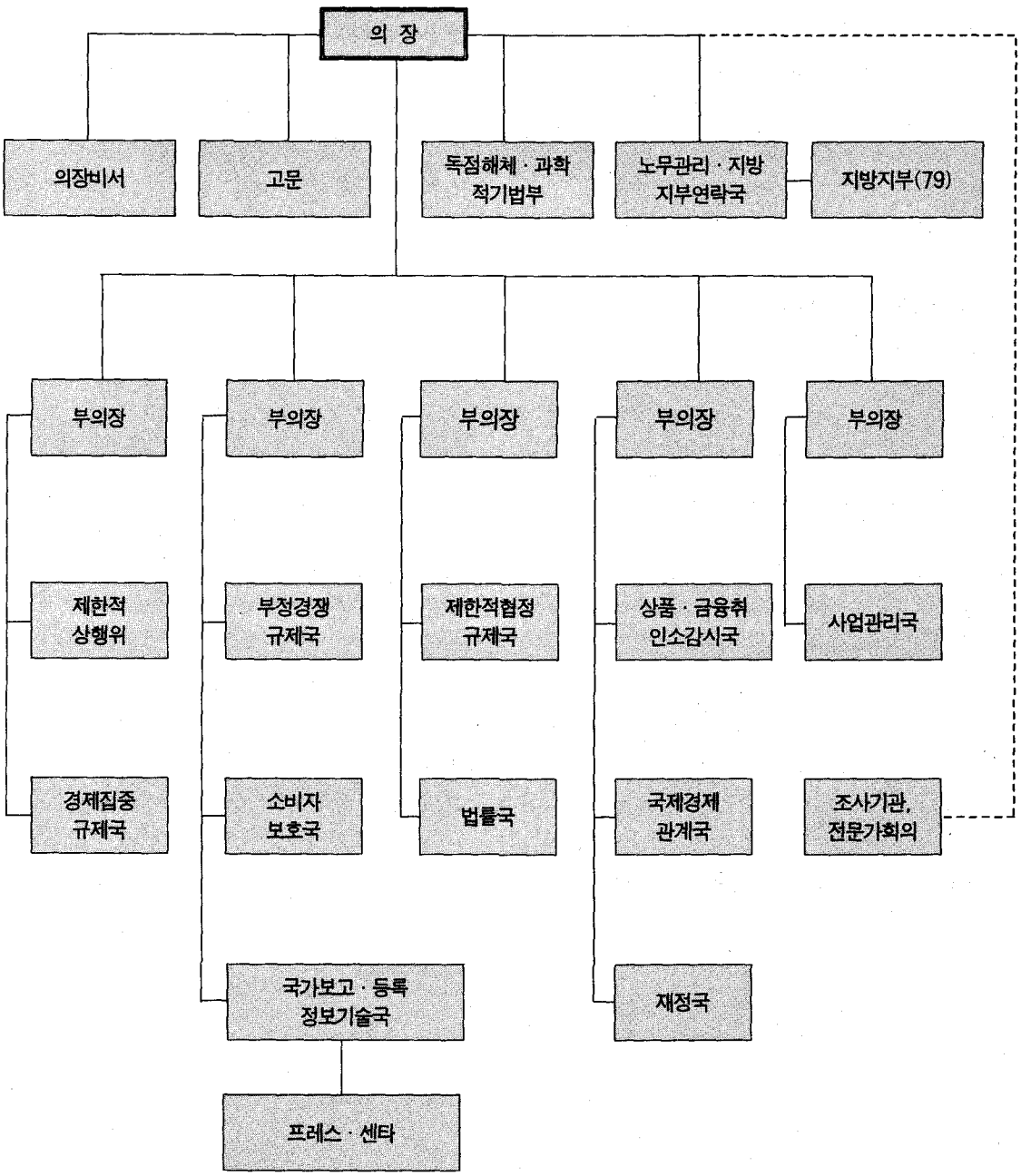

(1) 독점금지위원회의 책무

독점금지위원회의 책무는 ① 경쟁 및 기업가정신의 발전을 기초로 시장형성의 촉진, ② 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의 방지, 제한, 금지, ③ 독금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활동이다.

독점금지위원회는 이 이외에도 ① 러시아 연방정부에 대하여 독금법제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기능이나 경쟁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법률의 초안이나 규범 등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연방집행기관, 러시아 연방과 관련된 집행기관 및 지방정부의 기관(이하 이를 총칭하여 「정부기관」이라고 함)에 대하여 상품시장 및 경쟁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실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산 및 유통의 독점해체에 관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④ 경제주체의 설립, 재편성, 청산의 과정에 있어서 독점금지정책을 위한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⑤ 러시아 연방에 있어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제주체의 설립이나 또는 경쟁의 제한을 가져오는 주식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독점금지위원회는 독점해체, 경쟁촉진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실행에 참가할 수 있다(이상 법 제11조제2항, 제16조).

(2) 독점금지위원회의 권한(제12조)

독점금지위원회는 ① 경제주체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위반행위의 중지 및 배제, 원상회복, 강제적 분할(분리), 위반협정 항목의 배제, 변경, 위반에 의해서 얻은 이득의 국고에의 반환 명령, ②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위의 철폐, 변경,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협정의 파기명령, ③ 정부기관에 대한 면허제도, 수량할당제의 도입, 폐지, 관세율의 변경, 과세우대조치, 기타 국가원조에 관한 요구의 제출, ④ 정부기관 직원, 영리조직 · 비영리조직 및 동 경영자, 개인기업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제재금부과 결정 및 경고, ⑤ 독금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소송의 사법재판소 및 조정재판소에의 제기, ⑥ 독금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적절한 사법조직 또는 대리조직에의 자료의 제출, ⑦ 경제주체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사실 인정, ⑧ 러시아연방 관련법제에 규정된 권한행사 등을 하게 된다.

독점금지위원회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개인기업을 포함한 시민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군 당국은 독점금지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협력과 원조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정부기관,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개인기업을 포함한 시민은 독점금지위원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서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설명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여야만 한다(제14조). ■